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!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최근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 3 신설조항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체육시설과 같은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, 서울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하여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, 시 체육회의 자생력을 제고(提高)함으로써

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는 물론,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